평택지제역자이 입주자모집공고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다만,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제출,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방문 등은 정부방침 및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운영방침(관람인원·시간제한 등) 및 운영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www.jije-xi.co.kr)를 확인 후 의문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견본주택 방문시 **예방·방역절차 등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 3단계 적용시 견본주택 방문을 제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청약·계약 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절차는 우편접수 또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일정과 실시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는 2021.07.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23.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하며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등 청약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제한사항을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DTI 등),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❶「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❷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시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90일 이상,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단,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대상자로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의 주택 소유 예외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시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접수유형과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가점·추첨제 공급비율** - 85㎡**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손녀를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단,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 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

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세대의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7.23.)'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신청할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20년 4월 16일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 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 재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제한기간 (특별공급/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평택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및 당첨자선정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일반공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1.07.23.(**금**)	2021.08.03.(**화**)	2021.08.04.(**수**)	2021.08.05.(**목**)	2021.08.06.(**금**)	2021.08.12.(**목**)	2021.08.12.(**목**) ~2021.08.21.(**토**)	2021.08.23.(**월**) ~2021.08.29.(**일**)
비고	청약자격조건 등 판단기준일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6:00) (사전 방문예약제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장소	**아시아경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번지) ***사전예약자도 홈페이지 확인 후 방문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제반법령이 우선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32378호(2021.07.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BL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7층, 10개동, 총 1,052세대 중 일반분양 1,0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9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8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65세대 포함)

▌입주 예정 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043	01	059.9892A	59A	59.9892	19.6457	79.6349	36.0353	115.6702	39.6798	108	11	10	22	3	8	54	54	4
		02	059.9965B	59B	59.9965	19.8817	79.8782	36.0397	115.9179	39.6846	106	11	10	21	3	7	52	54	4
		03	074.9916A	74A	74.9916	23.4721	98.4637	45.0472	143.5109	49.6031	106	10	10	21	3	7	51	55	2
		04	074.9946B	74B	74.9946	23.3339	98.3285	45.0491	143.3776	49.6051	104	10	10	21	3	7	51	53	4
		05	084.9953A	84A	84.9953	26.3184	111.3137	51.0564	162.3701	56.2200	260	26	26	52	8	18	130	130	9
		06	084.9807B	84B	84.9807	26.1065	111.0872	51.0477	162.1349	56.2104	260	26	26	52	8	18	130	130	9
		07	097.9855A	97A	97.9855	29.7974	127.7829	58.8596	186.6425	64.8124	52	-	6	-	2	-	8	44	2
		08	097.9935B	97B	97.9935	29.5259	127.5194	58.8644	186.3838	64.8177	51	-	6	-	2	-	8	43	2
		09	099.9867P	99P	99.9867	31.7597	131.7464	60.0617	191.8081	66.1361	3	-	-	-	-	-	-	3	-
		10	113.9887P	113P	113.9887	35.7001	149.6888	68.4727	218.1615	75.3977	2	-	-	-	-	-	-	2	-
합계											1,052	94	104	189	32	65	484	568	36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시	2021.09.28	2021.11.11	2022.01.11	2022.04.12	2022.07.21	2022.11.10	2023.03.07	
59A	108	1층	4	129,492,600	177,507,400	-	307,0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61,400,000
		2층	4	132,318,660	181,381,340	-	313,70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31,370,000	62,740,000
		3층	4	135,186,900	185,313,100	-	320,50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32,050,000	64,100,000
		4층	4	138,055,140	189,244,860	-	327,30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32,730,000	65,460,000
		5층~15층	44	140,923,380	193,176,620	-	334,10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33,410,000	66,820,000
		16층 이상	48	143,074,560	196,125,440	-	339,20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67,840,000
59B	106	1층	2	132,529,560	181,670,440	-	314,20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31,420,000	62,840,000
		2층	4	135,439,980	185,660,020	-	321,10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32,110,000	64,220,000
		3층	4	138,392,580	189,707,420	-	328,10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32,810,000	65,620,000
		4층	4	141,303,000	193,697,000	-	335,0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67,000,000
		5층~15층	44	144,213,420	197,686,580	-	341,90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34,190,000	68,380,000
		16층 이상	48	146,448,960	200,751,040	-	347,20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34,720,000	69,44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시	2021.09.28	2021.11.11	2022.01.11	2022.04.12	2022.07.21	2022.11.10	2023.03.07	
74A	106	1층	2	160,537,080	220,062,920	-	380,60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38,060,000	76,120,000
		2층	4	164,122,380	224,977,620	-	389,10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38,910,000	77,820,000
		3층	4	167,665,500	229,834,500	-	397,50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39,750,000	79,500,000
		4층	4	171,208,620	234,691,380	-	405,90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81,180,000
		5층~15층	44	174,751,740	239,548,260	-	414,30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41,430,000	82,860,000
		16층 이상	48	177,409,080	243,190,920	-	420,60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84,120,000
74B	104	2층	4	166,442,280	228,157,720	-	394,60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39,460,000	78,920,000
		3층	4	170,027,580	233,072,420	-	403,10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40,310,000	80,620,000
		4층	4	173,612,880	237,987,120	-	411,60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41,160,000	82,320,000
		5층~15층	44	177,240,360	242,959,640	-	420,20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84,040,000
		16층 이상	48	179,939,880	246,660,120	-	426,60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85,320,000
84A	260	1층	7	186,224,700	255,275,300	-	441,50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88,300,000
		2층	9	190,316,160	260,883,840	-	451,20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45,120,000	90,240,000
		3층	10	194,449,800	266,550,200	-	461,0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92,200,000
		4층	10	198,541,260	272,158,740	-	470,70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47,070,000	94,140,000
		5층~15층	110	202,674,900	277,825,100	-	480,50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48,050,000	96,100,000
		16층 이상	114	205,754,040	282,045,960	-	487,80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97,560,000
84B	260	1층	7	185,845,080	254,754,920	-	440,60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44,060,000	88,120,000
		2층	9	189,936,540	260,363,460	-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90,060,000
		3층	10	194,028,000	265,972,000	-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92,000,000
		4층	10	198,161,640	271,638,360	-	469,80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93,960,000
		5층~15층	110	202,253,100	277,246,900	-	479,50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95,900,000
		16층 이상	114	205,332,240	281,467,760	-	486,80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97,360,000
97A	52	1층	2	202,111,840	276,989,236	27,698,924	506,80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101,360,000
		2층	2	206,578,400	283,110,545	28,311,055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03,600,000
		3층	2	211,044,960	289,231,855	28,923,185	529,20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52,920,000	105,840,000
		4층	2	215,511,520	295,353,164	29,535,316	540,40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54,040,000	108,080,000
		5층~15층	22	219,978,080	301,474,473	30,147,447	551,60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110,320,000
		16층 이상	22	223,328,000	306,065,455	30,606,545	560,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12,000,000
97B	51	1층	1	201,673,160	276,388,036	27,638,804	505,70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50,570,000	101,140,000
		2층	2	206,139,720	282,509,345	28,250,935	516,90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103,380,000
		3층	2	210,606,280	288,630,655	28,863,065	528,10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105,620,000
		4층	2	215,072,840	294,751,964	29,475,196	539,30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53,930,000	107,860,000
		5층~15층	22	219,499,520	300,818,618	30,081,862	550,40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110,080,000
		16층 이상	22	222,849,440	305,409,600	30,540,960	558,80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55,880,000	111,760,000
99P	3	26층	3	238,322,880	326,615,564	32,661,556	597,60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59,760,000	119,520,000
113P	2	27층	2	276,089,240	378,373,418	37,837,342	692,30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138,46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가전옵션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97A	97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4	4	3	4	9	9	-	-	3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2	2	-	-	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1	1	2	2	-	-	8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2	2	-	-	8	
	장애인	경기도	2	2	2	1	5	5	-	-	17	37
		서울특별시	1	1	1	1	4	4	-	-	12	
		인천광역시	1	1	1	1	2	2	-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5	5	5	5	13	13	3	3	52	104
	기타지역 거주자 [50%]		5	5	5	5	13	13	3	3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22	21	21	21	52	52	-	-	18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3	3	8	8	2	2	32	
생애최초 특별공급			8	7	7	7	18	18	-	-	65	
합 계			54	52	51	51	130	130	8	8	484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단수 처리기준 : 소수점 이하 절상[(예시) 9세대 공급시 : 우선공급(70%) - 7세대 배정, 일반공급(30%) - 2세대 배정]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td><td>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유형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td></tr>
<tr><td>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td><td>
•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th></tr>
<tr><td>일반(기관추천)</td><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td></tr>
<tr><td>다자녀가구</td><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tr>
<tr><td>신혼부부</td><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tr>
<tr><td>노부모부양</td><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tr>
<tr><td>생애최초</td><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tr>
</table>
</td></tr>
</table>

구 분	내 용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청약과열지역 :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여부 등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후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불가]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국가 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경기남부보훈청 복지과	031-259-1783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장애인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9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
	인천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원칙** :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거 **'추천대상자'로 사업주체에 선정·통보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로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시 당첨자로 확정**합니다. (단,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현황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로 결격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예비대상자 유의사항** : 추천기관에서 선정·추천된 '예비대상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대상 세대 중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2)+(3)+(4)+(5)+(6)		
(1)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기준 공급유형	소득 적용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비율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우선공급 - 기준소득 [7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 충족**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 이혼자녀 제외)**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기준 공급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3항에 따른 가구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구당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④ 상기 ②, ③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동일 기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소득기준 또는 일반공급 소득기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② 추첨으로 선정된 자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제한**, **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공급비율** - 85㎡**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1순위 청약 접수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거주 구분	청약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해당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1.01.23.**이전부터 연속거주**) ▌기타지역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1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 자격요건(아래 ①~⑤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② **입주자저축 인정금액** : **입주자저축별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납입인정금액) **충족** ③ **세대 구성원** : **세대주** ④ **주택 소유**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⑤ **당첨 사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는 자**(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포함)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별 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 **및 가입기간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예금	**청약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청약부금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의 예치기준금액 충족**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85㎡이하 주택형만 청약신청 가능)

※ **기타 입주자저축 안내**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청약부금 :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①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청약자 본인은 제외**) •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1)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2)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라)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마)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바)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 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됩니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산정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확인할 서류 등</th></tr>
<tr><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d rowspan="9">•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d rowspan="4">•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⑵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8">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8">17</td><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d rowspan="8">-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총점</td><td>84</td><td colspan="4">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td><td></td></tr>
</table>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본인이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2**순위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가능
  *청약부금은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청약가능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시 자격 충족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시 청약가능(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①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5호(20㎡이하) ⊕ **소형·저가**	2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1	5호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0	**모두 적용**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x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청약자가 입력(선택)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여 당첨자 또는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제한사항이 발생하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또한, 당첨(계약)취소 세대는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IV 청약일정, 신청방법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8.03. (**화**) (인터넷 : 청약Home 08: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정보취약자 :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평택시 소사동 산 9-13)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	2021.08.04. (**수**) 08:00~17:30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 지역 거주자	2021.08.05. (**목**) 08:00~17:30	
	2순위	전국 지역 거주자	2021.08.06. (**금**) 08:00~17:3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접수시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1.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 신청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 신청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분리하였으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1**순위(해당) 접수일에만 청약 가능** /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전국지역 거주자** : 1**순위(기타) 접수일에만 청약가능**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 전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 "**청약가상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청약예정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든은행 청약자)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자격 등 입력⇒청약 완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정보취약계층 방문청약 방법	• **특별공급 접수일에 견본주택 방문접수(접수 가능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 접수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창구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 입주자모집공고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참고) ※ 견본주택 방문신청 접수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V 당첨자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08.12.(**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의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8.12.(**목**)~8.21.(**토**) -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대상 2021.08.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출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제출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2021.08.12.(**목**) ~ 2021.08.21.(**토**) 10:00 ~ 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번지) ***사전방문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견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증빙용 ※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비속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1년 이상 연속 등재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아래 ①~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Ⅶ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2021.08.23.(**월**) ~ 2021.08.29.(**일**) 10:00 ~ 16:00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평택지제역자이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9-13번지) ***사전방문예약제로 계약체결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세대 발생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 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 유무, 기분양권 중도금 대출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개인별로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20%) 완납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기표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시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 총액을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시(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공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근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청약, 계약시 분양상담사가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미신청 또는 개인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이자후불제 미적용에 따른 공급금액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수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231-910032-03504	**교보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공급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개인별 전용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Ⅷ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97A	97B	99P	113P
공급대금	15,700,000	16,500,000	19,700,000	20,200,000	23,400,000	22,140,000	24,100,000	23,900,000	28,300,000	30,900,000
계약금(10%)	1,570,000	1,650,000	1,970,000	2,020,000	2,340,000	2,214,000	2,410,000	2,390,000	2,830,000	3,090,000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대금은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기본형 발코니세대** : **비확장세대**]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① 조명 특화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조명 특화옵션 내역	- **특화조명**(침실, 거실, 주방, 욕실),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주방 우물천장), **리니어조명**(거실 아트월, 거실벽, 복도벽), **우물천장**(주방)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97A	97B	99P	113P
[A] 조명 특화옵션 ※ 침실4 공간옵션 미선택 시	공급대금	3,100,000	3,250,000	3,650,000	3,800,000	3,900,000	3,650,000	4,350,000	4,350,000	4,350,000	4,700,000
	계약금(10%)	310,000	325,000	365,000	380,000	390,000	365,000	435,000	435,000	435,000	470,000
[B] 조명 특화옵션 ※ 침실4 공간옵션 선택 시	공급대금					4,350,000	4,300,000	4,800,000	4,800,000		
	계약금(10%)					435,000	430,000	480,000	480,000		

※ 조명 특화옵션의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www.jije-xi.co.kr)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조명 특화옵션 [A], [B]형은 계약자의 '침실4 공간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설치품목·시공부위 및 공급대금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간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A) 침실4 공간옵션

구분		84A	84B	97A	97B
[구성1] 와이드 다이닝+맘스오피스+팬트리+스피커 일체형 조명 (홈바 제외)	공급대금	2,000,000	2,000,000	2,200,000	2,400,000
	계약금(10%)	200,000	200,000	220,000	240,000
[구성2] 와이드 다이닝+맘스오피스+팬트리+스피커 일체형 조명+홈바	공급대금	3,500,000	3,500,000	3,700,000	3,900,000
	계약금(10%)	350,000	350,000	370,000	390,000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B) 침실1(안방) 공간옵션 - (벽판넬형 드레스룸)

구분	59B	74B	84A	84B	97A	97B	99P	113P
공급대금	1,900,000	2,0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300,000
계약금(10%)	190,000	2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30,000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③ 유럽산 포셀린타일 바닥 마감(거실+주방+복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97A	97B	99P	113P
[A] 포셀린타일	공급대금	670,000	810,000	860,000	910,000	910,000	910,000	1,080,000	1,080,000	1,360,000	1,690,000
※ 침실4 공간옵션 미선택 시	계약금(10%)	67,000	81,000	86,000	91,000	91,000	91,000	108,000	108,000	136,000	169,000
[B] 포셀린타일	공급대금					1,070,000	1,110,000	1,220,000	1,240,000		
※ 침실4 공간옵션 선택 시	계약금(10%)					107,000	111,000	122,000	124,000		

※ 포셀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금액	비고
전 주택형	공급대금	1,850,000	
	계약금(10%)	185,000	

※ 현관중문 선택시 주택형별 현관 신발장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하나은행	계약금	231-910032-04104	교보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공급계약서 참조)	
플러스옵션	국민은행	계약금	006037-04-006589	지에스건설(주)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공급계약서 참조)	

납부일정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1년 11월 11일(목)**	입주지정기간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플러스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각각 발코니확장과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전옵션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A,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20,000	LG전자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4,58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680,000		
74A,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4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4,60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140,000		
84A,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52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5,06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 2개소 선택	6,160,000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7,260,000		침실4 공간옵션 미계약시에만 선택가능
97A,B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6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6,16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2개소 선택	7,51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600,000		침실4 공간옵션 미계약시에만 선택가능
99P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3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6,13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2개소 선택	7,47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8,570,000		
113P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070,000		
	선택2	4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1개소 선택	6,170,000		
	선택3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2개소 선택	7,52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6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 산정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시 발생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84A/B, 97A/B 침실4 공간옵션 선택시에는 침실4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불가합니다.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시스클라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59A/B, 74A/B, 84A/B, 97A/B, 99P	선택 1	2대	거실+주방	1,750,000원	자이에스앤디(주)	
	선택 2		거실+침실1	1,750,000원		
	선택 3	3대	거실+주방+침실1	2,625,000원		
	선택 4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4,375,000원		
113P	선택 1	2대	거실+주방	1,750,000원		
	선택 2		거실+침실1	1,750,000원		
	선택 3	3대	거실+주방+침실1	2,625,000원		
	선택 4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5,250,000원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4A/B 타입의 알파룸, 84A/B, 97A/B타입의 침실4 및 99P의 알파룸은 설치공간 제약으로 시스클라인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모델명	공급대금	제조사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S711SI24B	5,750,000	LG전자	홈바형
		S691SI34BS2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L1/BR1	1,450,000		
	광파오븐	MZ385EBT	450,000		
	식기세척기	DUB22SB	1,100,000		
	하이브리드쿡탑	CIR-S3220FLBE	450,000	쿠첸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주방가전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가전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템,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계약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해제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예정월 : 2023**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은 60일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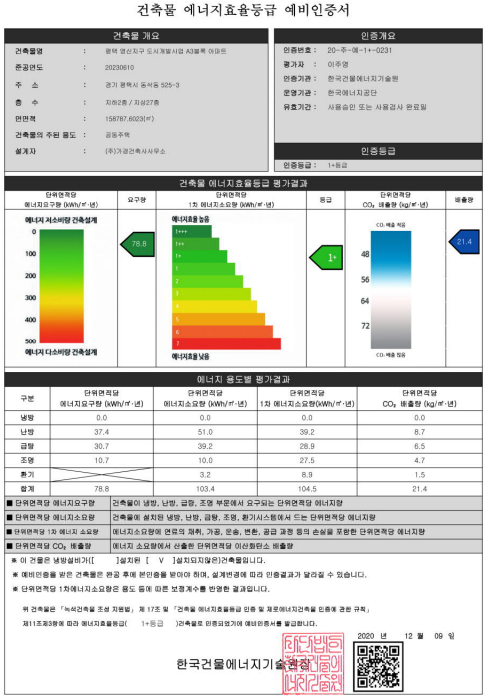

장수명주택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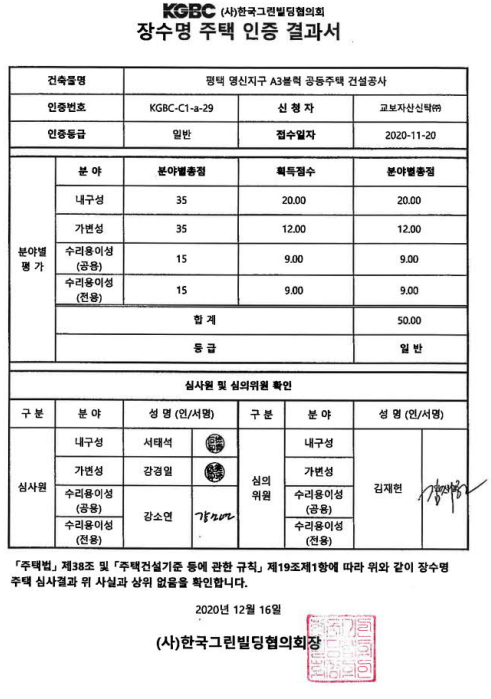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내진중요도 I 등급 :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지하주차장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로 계획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고기밀성 창호	적용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및 제8조 창의 기밀성능을 준수
단열조치	적용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고효율기자재	적용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3호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적용(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현관 별도 회로로 구성된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LED 조명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 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금 액	3,028,249,400	542,264,000	467,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엘케이이엔씨	교보자산신탁(주)	지에스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8, 7**층(삼성동,** ELSON**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10111-5190808	110111-1617434	110111-000269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08800**호**	375,670,4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X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21년 5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다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카다로그 등)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 주변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B, 84B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 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므로 추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업이 완료되어야 대지권(토지) 등기가 가능하므로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5월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 2020년 10월 29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부지는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속한 부지로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은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준공의 책임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의 중단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평택 영신지구의 환지처분 후 환지등기 완료시점에 대지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능 시기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한국토지공사, 해당 지자체 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및 입주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평택 영신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여건변동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준공 전 본 단지의 입주 및 주변 지역의 사업지연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계약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미비할 수 있으며,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 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인도, 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버스정류장(BRT 포함)의 위치 및 개소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현황]
- 단지 남측에는 지제동삭2로, 북측, 서측 및 동측에는 신규 개통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소음 예측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계획(남측, 북측, 동쪽 및 서쪽 일부)되어 있으나 택지 내 도로 및 아파트 골조 완료 후 실시하는 소음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서측에는 공공공지, 북측 및 동측에는 공사 예정 단지, 남측에는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소음 및 먼지, 불쾌한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에는 산업단지가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인근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북측의 버스정류소의 위치는 시청 또는 주무관청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및 개발계획변경 등에 따라 각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공원계획 및 녹지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반영돼 있는 '국도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분담금' 납부 부과 대상으로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분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평택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기반시설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 사업지의 주출입구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국공립어린이집]
- 초등학교는 영신지구 내 (가칭)영신초의 설립 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되며, 학생배치계획은 개발사업 진행상황, 입주시기, 입주율, 실제 학생 발생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 중인 (가칭)영신초는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지연 또는 연기, 취소 등)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평택모산초, [가칭]지제1초(계획), 세아초, 동삭초가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 상황에 따른 사업지 인근학교의 학생배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 1년 전인 2022년도에 평택교육지원청 통학구역위원회를 거쳐 통학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 내 중학생은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용이중, 소사벌4초·중(중: 2023. 3. 개교예정), 동삭중(2023. 3. 개교예정)] 내에 배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최초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평택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업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비상차 및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9㎡P타입 층의 옥상공간(101동 1호라인, 102동 1호라인, 107동 1호라인)과 113㎡P타입 층의 옥상공간(104동 4호라인, 110동 4호라인)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해당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다른 세대의 진입도 불가합니다. 다만, 이 공용공간은 시설물 관리직원의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옥상 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남측에 위치한 102동, 103동, 104동 및 북측에 위치한 107동, 108동, 109동, 110동에는 방음벽이 설치되며 방음벽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10동 서측에는 유수지,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공원 예정부지가 있어 근린공원 이용자에 의해 추후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출입구에는 제연구획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출입통로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03동, 104동, 105동 2호, 3호 저층세대에서는 동출입구 게이트 특화 추가 반영에 따른 침실4, 알파룸, 주방/식당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 저층세대에서는 문주 게이트 특화 반영에 따른 침실1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 남측에 한국전력 지중개폐기, 107동 동북측에 한국전력 지중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 모형에 표현된 위치 및 수량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측 지상 차량회전 구간에는 스쿨버스존과 차량 승하차를 위한 DROP ZONE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중앙부에는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하며 인접동은 외부인의 통행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과 109동 1층 및 동 중간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아너스클럽)이 계획되어 있으며, 108동과 109동 지하1층에는 주민편의시설(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동 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단지 모형 또는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계획상 주동의 형태가 남동향 및 남서향의 단지 배치로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조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단지 여건상 위치가 구분되어 있지만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아너스클럽) 상부에 옥상조경 및 미술장식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단지(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내 건물의 외관디자인(색채, 입면패턴, 줄눈계획, 마감재, 몰딩,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로고(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도장 등으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와 도장 등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동[어린이집, 경로당(아너스클럽), 스쿨버스존 등], 선큰의 외부마감은 치장벽돌, 금속, 페인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 및 램프커버의 위치와 선형, 길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일조침해 및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문주의 형태, 위치, 마감재, 색상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 일부 출입구에는 돌출형 출입구와 돌출형 계단, 램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입구 디자인 및 계단, 램프의 위치와 선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 선큰,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부속동[어린이집, 경로당(아너스클럽), 스쿨버스존,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외벽마감, 각동 필로티(캐노피 등), 지하 출입구, 기타 공용부는 디자인계획/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및 기둥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요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옥상 및 외벽에는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마감 및 재질은 인허가 및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경관조명은 빛 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펜트하우스 앞 옥상공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펜트하우스 세대와 인접세대는 눈부심, 빛 공해,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최상층 펜트하우스(110동 2703호) 앞 옥상공간 외벽일부에 로고(BI) 설치를 위한 벽체구조물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여 해당 세대는 일조 및 조망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 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필히 확인하시고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펜트하우스 앞 옥상공간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방 및 진입이 불가한 공간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아너스클럽)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클럽자이안(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로비라운지, 키즈룸 등) 및 부속동[경로당(아너스클럽),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료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4호 라인), 103동(4호 라인), 105동(4호 라인), 107동(4호 라인) 옥상층 등 일부구간 및 전기실, 105동 지하2층 PIT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 설치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107동 일부 세대에서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1, 2호 라인은 근린생활시설과 구조물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료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지역난방 방식 적용으로 별도의 세대별 개별보일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371대, 근린생활시설 6대, 총 1,377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은 에폭시페인트로 진행될 예정이며, 차량에 의한 우수 및 눈의 유입에 따라 통행시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4개소(급속5 완속9)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3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4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 지하 1층, 2층 주차장은 전체 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지하 1층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주차구역 및 일부구간은 천정배관 등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하2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동출입구는 구조 검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7동 남측,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및 주방배기 등은 입점자 공사분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단지에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6대)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 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후면에는 환기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동의 저층 거주세대는 소음, 시선 간섭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및 전면 폭이 시공단계에서 인허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 공공보행 통로의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평면)]
•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기준층 및 최상층의 기본타입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1층 세대 및 팬트타입 세대는 2400mm)
• 입주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냉장고장은 기본형1, 2 중(59A 주택형은 기본형으로만 선택)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가전옵션 계약(유상)고객에 한하여 선택한 가전품목(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에 따라 옵션형1, 2가 시공됩니다.(주택형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자가 소유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침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에는 공사용 개구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사용 개구부의 마감은 사업승인신청일 기준 허가시 신청한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급 이상의 건식벽체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다로그 등)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힌지, 레일 등은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되며,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세탁선반,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세탁선반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 발코니세대** : **비확장세대**]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유상)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창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기본형(비확장) 선택시 발코니 외부창호 및 실외기실 그릴 내부 방충망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의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세대는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준공 이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가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단위세대(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프레임 포장재는 PVC재질이며, 해당 재질의 색상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및 침실창에 설치되는 방충망은 충격에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책상 및 가구 배치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시 외부창호 및 철재난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니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위세대(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발코니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발코니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선택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유상)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타일옵션(무상) 선택에 따라 단위세대 마감재 색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 설치현황 및 변경품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거실아트월, 강마루, 주방가구, 주방상판&벽, 목창호, 도어, 걸레받이 색상 등)

[단위세대(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에는 거실에는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 매립배관 및 박스가 각각 1구씩 설치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 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스마트스위치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스마트스위치(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패스 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스피커 일체형조명은 침실4 공간옵션(유상)을 선택한 84A, 84B, 97A, 97B TYPE에만 적용됩니다.
- 조명 특화옵션(유상) 선택시 거실, 침실, 알파룸에 조명은 디밍이 적용되며, 미선택시에는 거실에 디밍만 적용됩니다.
- 조명 특화옵션(유상)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전자식 스위치)의 형태(디스플레이창 크기) 및 기능(디밍 조절 유무), 터치방식이 변경 적용됩니다.
-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월패드)은 거리에 따라, 음성엔진 인식범위에 따라, 주변소음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 모델하우스)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엘케이이엔씨가 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에 시행권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엘케이이엔씨이며, 교보자산신탁㈜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엘케이이엔씨,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 시공사인 지에스건설㈜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교보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해당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만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시공상 하자 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부담하며, 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시점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가 분양계약상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엘케이이엔씨에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

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대금의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소유권이전 등)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엘케이이엔씨가 부담하고 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에 대하여 분양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교보자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계약자의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아파트 공급대금(85㎡ 이상 주택형에 한함), 발코니 확장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시행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의 의무가 아니며, 시행위탁사인 ㈜엘케이이엔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합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시행 KYOBO 교보자산신탁 위탁 (주)엘케이이엔씨 시공 GS 건설

문의 1800-5944